

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

시행일

- 2006년 6월 29일부터 시행
- 질소산화물 (NOx) 규제에 따른 소형의 디젤기관
 - 소형의 디젤기관 중 130(176마력)킬로와트 이상 294(400마력)킬로와트 미만 ⇒ 2009년 6월29일부터 시행
 - 소형의 디젤기관 중 294(400마력)킬로와트 이상 367(500마력)킬로와트 미만 ⇒ 2006년 6월29일부터 시행

개정사유

「해양오염방지법」이 개정(법률 제7787호, 2005년 12월 29일 공포)됨에 따라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치대상 및 기술기준 등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· 보완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치대상 (안 제52조의3제1항)

-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배출방지설비 등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선박에 설치하도록 함.
-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줄어들게 되어 대기환경 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나. 대기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 (안 제52조의3제2항)

- 대기오염방지설비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되고 유지되도록 기술기준을 규정함.
-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줄어들게 되어 대기환경 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다. 질소산화물의 배출이 규제되는 소형의 디젤기관 (안 제52조의5)

- 국제항해 선박과 동일하게 130킬로와트 이상의 디젤기관으로부터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규제토록 함.
- 선박으로부터의 질소산화물의 배출이 줄어들게 되어 대기환경 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라.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에 대해 선박 설치전 검사 (안 제53조의2)

-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을 선박에 설치 전에 검사를 신청하여 합격한 경우 설치 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.
-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을 선박에 설치 전에 검사를 수행함으로써 선박에 설치 후 검사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됨.